

◆ D-38 산재보상시 평균임금 산정 법률 개정내용

1. 최저 및 최고 보상기준

최저보상기준 : 24,080원 최고보상기준: 122,807원

2. 고령자(65세이상재해자)의 휴업급여 및 상병보상연금 산정시 평균임금의 65%를 지급

3. 일용근로자 평균임금산정시 통상근로계수 적용

- ① 적용대상: 1일단위로 고용되거나 일당형식의 임금을 지급받는 근로자
- ② 적용제외:
 - 동종근로자의 근로관계가 3월이상 계속되는 경우,
 - 직전3월간 월평균 근로일수가 통상근로계수 산정기초가 되는 근로일수(22.3일)를 초과하는 경우
 - 근로조건, 근로계약형식, 구체적 고용실태등 제반사실관계를 고려할 때 사업장내 동종업무에 종사하는 상용근로자와 유사하다고 인정하는 경우
- ③ 이의신청
평균임금 산정사유 발생일 당시 **당해사업에 1월이상** 근로한 기간이 있는 일용근로자가 통상근로계수를 적용하는 것이 부적당하다고 신청하는 경우로서 지급된 임금액이 신청인에 제출한 자료등에 의거 명확한 경우
--> 평균임금을 정정함.
- ④ 적용방법
당해 1월간 지급된 임금총액/실근로일수 x 통상근로계수(73/100)
출근초일 재해 : 일당 x 통상근로계수(73/100)